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24160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62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택

피고B

변론 종결 2021. 8. 11.

판결 선고 202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와 C 사이에 D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해지와 이체를 통한 2019. 1. 2.자

금원지급행위를 16,568,08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68,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8. 2. 13.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식회사 E는 피고의 계좌로, 2018. 4. 9. 4,000,000원을, 2018. 4. 12.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8. 5. 15. C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주식회사 F의 계좌로, 2018. 7. 4. 20,000,000원을, 2018. 8. 1.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8.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당사자 표시

양도인: C

양수인: 피고

채무자: D 주식회사

2.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명정기예금 150,000,000원

3. 양도, 양수 내용

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2항 양도할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정히 양수하였다.

나. 양도인과 채무자는 양수인이 위 채권을 추심함에 이의 없기로 한다.

다.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양수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도인이 잔액에 대하여 변제 의무를 진다.

라. 양도할 채권은 G에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바, 2018. 10. 30.까지 양도인 책임으로 담보를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4. 채권양도통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할 수 있다.

다. 1) C은 2019. 1. 2. 자신의 계좌(D 주식회사: (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여 잔액 151,987,126원 중 1,987,126원을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C의 피고에 대한 150,000,000원 지급행위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2) 피고는 2019. 1. 7. 주식회사 F의 계좌로 70,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9. 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E 대표 C은 H 소재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덤프트럭 운반비 18년 3월과 4월 1,650,000원과 복구에 사용된 18년 11월 12월 사용료 11,540,000원을 합한 13,190,000원을 원고에게 2019. 5. 30.까지 지불한다.

아울러 C은 1과 체결한 2018. 11. 1.의 지불각서에 원고에게도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각서인: E 대표 C

※ 특약사항: 현재 E에서 안동작업장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1차 2차로 분납으로 위 날짜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C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장비사용료 등 청구의 소(위 법원 2019가소11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5. 'C 및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2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일은 C이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운반계약체결을 원고에게 요청한 2018. 9. 3.이다.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채권은 주식회사 E의 영주시 H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된 원고의 덤프트럭 운반비 또는 사용료 채권이므로, 그 채무자는 주식회사 E라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9. 2. 27.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2019. 1. 2.에 원고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C 사이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일인 2019. 1. 2.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민규